

수원시 공고 제2021-1984호

## 제9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수원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1년 9월 6일

수 원 시 장

### 1. 운영근거 및 역할

####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 위원임기 : 2년(2021. 10. 20. ~ 2023. 10. 19.)

#### ○ 주요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자문

## 2. 공모 부문 및 인원 · 자격

### ○ 대표협의체 위원의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공모 부문 및 인원

부 문	공모인원	세 부 요 건
지역돌봄 전문가	2	○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의 통합적 전문가 또는 방문 의료 등 지역의료 전문가
사회공헌 (종교단체 포함)	4	○ 수원시 소재하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사회공헌 관련기관(단체) 대표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학계 및 연구기관	3	○ 수원시 소재 대학(연구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
공익 · 시민사회단체	2	○ 비영리지원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 공익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수원시 소재 단체에 한함)

※ 사회복지, 건강, 일자리, 주거, 문화 부문은 부서 및 단체 추천으로 진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4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추후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공고 개요

- 공고기간 : 2021. 9. 6.(월) ~ 2021. 9. 17.(금)
- 접수기간 : 2021. 9. 6.(월) ~ 2021. 9. 17.(금) 18:00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
- 제출서류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공고 신청(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접수처
  - 수원시청 복지협력과 복지자원팀
    - ☎ 031-228-2605, ✉ ppoint76@korea.kr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 031-898-9852, ✉ suwon-aswc@daum.net
- 결과통지 :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 관계 법령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40조 ④항 위원이 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 ③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업무담당국장, 장안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